

보도자료



2019. 6. 11(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11(화) 오전 10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6. 10(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에너지안전과 분산에너지과 전자전기과 소방청 화재예방과
담당과장	이귀현 과장 (043-870-5410) 이희원 과장 (044-203-5270) 이경훈 과장 (044-203-5380) 남명우 과장 (044-203-4340) 이윤근 과장 (044-205-7440)	담당자	김준호 연구관 (043-870-5415) 박성민 사무관 (044-203-5273) 박상호 사무관 (044-203-5198) 김진수 서기관 (044-203-4346) 정홍영 계장 (044-205-7455)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

-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관리 미흡 등 4가지 사고원인 확인
- 제조·설치·운영·소방 각 단계별 종합안전강화대책 마련
-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조치 추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9.6.11(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산업부는 ’18.5월부터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현장실태조사,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자교육 등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왔다.
- 특히,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전면 가동 중단과 함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설치 (‘18.12.27)하고, 약 5개월 여에 걸쳐 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 조사위는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 76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거쳐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기관, 약 90명의 인원이 참여
-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중에 발생하였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고, 설치·시공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 사고원인으로, ①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②운영환경 관리 미흡, ③설치 부주의, ④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참고1.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을 확인하였고,
- ⑤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하였으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 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SS 안전강화 대책

-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 ① 제조기준 :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 (KC인증 강화)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하여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PCS는 금년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로 높이고, '21년까지 2MW로 확대 키로 했다.

* (안전인증) 제품시험+공장심사, (안전확인) 제품시험

- (KS표준 제정)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5.31일에 제정하였으며,

* ①전기, ②기계, ③폭발, ④전자기장, ⑤화재, ⑥온도, ⑦화학, ⑧오작동, ⑨환경

- 나아가, 금번 실증시험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ESS분야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단체표준 채택) 전기산업진흥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지산업협회, 관련업계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배터리시스템 보호장치 성능사항^{*}, ESS 통합관리 기준^{**} 등을 금년 중 단체표준에 추가하고, 고효율 인증, 보험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 직류접속기(MC) 내구성, 퓨즈 동작 특성 등

** BMS·EMS·PMS 간 통신규약, 배터리·PCS간 보호장치 작동 절차 등

② 설치기준 : 옥외 전용건물 설치 유도 및 안전장치 의무화

- (설치장소별 기준마련) ESS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하여 안전성을 제고한다.

- (안전장치 및 환경관리)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실 온도·습도 및 분진 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강화) 이상징후(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상승 등)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며, - 사고시 원활한 원인규명을 위해 배터리 상태(전압, 전류, 온도 등) 등 ESS 운전기록을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토록 의무화된다.

③ 운영 · 관리 : 점검 강화를 통한 운영 · 관리 단계 안전성 제고

- (정기점검 강화) 정기점검주기를 단축(4년 → 1~2년)하고, 전기안전 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며,

- (특별점검 실시)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미신고 공사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 변경공사 인가·신고 대상을 공조시설 변경 등까지 확대(「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 미신고시 1천만원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④ 소방기준 :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 (소방 제도개선)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하며,

- (화재대응 강화) 소화약제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작전절차(SOP) 제정(19.下)을 통해 화재시 조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기존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

-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5.17 구성)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 ESS 안전관리위원회는 사고조사위의 일부 위원 및 전기·소방·건축 전문가로 구성(5.17)하여 4차례 회의를 통해 시설별로 적용할 안전조치를 논의

① (공통안전조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①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②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 공통안전조치는 배터리, EPC 업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기 진행중(18.12월~)

② (추가안전조치)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토록 조치한다.

③ (소방특별조사) 가동중단 사업장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옥외이설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판매시설, 숙박·체육·병원·교육시설, 업무시설 등

□ 상기 안전조치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 공통안전조치는 각 사업장 ESS 설비의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되, 이미 업계가 자체적으로 조치 중이고,
- 방화벽 설치 등 추가안전조치는 옥내 설치된 ESS설비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 비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향후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ESS 재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

□ 산업부는 상기 안전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하여,
-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철저한 안전관리에 기반한 ESS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ESS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전력소비 효율화 등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분야이며, 그간 우리 ESS 산업은 동 분야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 ESS용 리튬이온전지 세계시장규모: '17년 4.8GWh → '25년 20GWh (연평균 37%↑)

□ 하지만, 금번 화재사태로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우리 ESS 산업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만큼, 정부는 금번 ESS의 안전제도 강화 조치를 기반으로 우리 ESS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ESS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 분야에는 화재 위험성이 적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초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PCS는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또한, ESS 생태계 전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칭)ESS 협회* 설립을 추진해 업계 소통과 협업 수준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 전력분야 협·단체별로 ESS 작업절차서(매뉴얼) 마련 및 관계자 교육 실시, 분야별 업계의견 수렴, 산업통계 작성, 표준안 마련, 해외사례 조사 등 역할

□ 한편, 미래 신산업으로서 우리 ESS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번 화재사태로 위축된 성장활력 회복이 필요한 만큼,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한다.

* 태양광 연계 : (현행) '19년까지 5.0, '20년부터 4.0 → (연장) '20.6월까지 5.0, '20.7월부터 4.0
풍력 연계 : (현행) '19년까지 4.5, '20년부터 4.0 → (연장) '20.6월까지 4.5, '20.7월부터 4.0

- 안전조치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단체보험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ESS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제'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 *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을 받은 ESS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법인세에서 공제중
- 강화되는 ESS 설치기준 개정완료 전(8월말 예정)까지 신규발주 지역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 6월 중순에 '사용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해,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ESS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 화재사태를 계기로, ESS의 안전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김준호 연구관(사고원인조사, 043-870-5415), 에너지안전과 박성민 사무관(안전강화 대책, 044-203-5273), 분산에너지과 박상호 사무관(기존 사업장 안전 조치 및 재가동, 044-203-5198), 전자전기과 김진수 서기관(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044-203-4346) 소방청 화재예방과 정총영 계장(소방 관련, 044-205-74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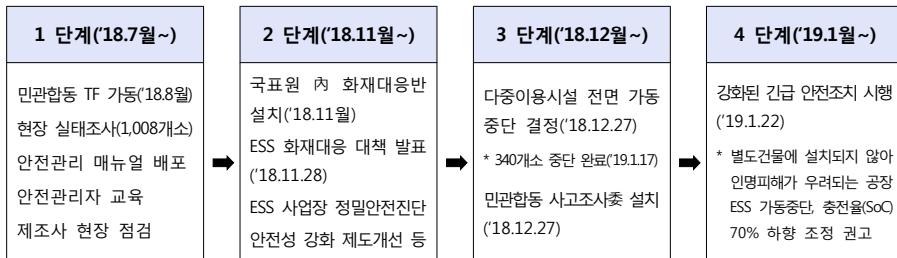
참고 1 ESS 화재 사고원인 조사결과

- ①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전기적 위해요인 중, 지락·단락에 의한 전기충격(과전압/과전류)이 배터리 시스템에 유입될 때, 배터리 보호 체계인 랙 퓨즈가 빠르게 단락전류를 차단하지 못하였고,
 - 이로 인해 절연 성능이 저하된 직류접촉기가 폭발하여 배터리 보호장치 내에 버스바와 배터리보호장치의 외함에서 2차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② **(운영환경관리 미흡)** 산지 및 해안가에 설치된 ESS의 경우, 큰 일교차로 인한 결로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어,
 - 배터리 모듈내에 결로의 생성과 견조가 반복(Dry Band)되면서 먼지가 놀려 붙고 이로 인해 셀과 모듈 외함간 접지부분에서 절연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편, 일부社의 배터리 모듈*은 냉각팬을 사용하는 구조로 냉각팬이 먼지·수분의 이동경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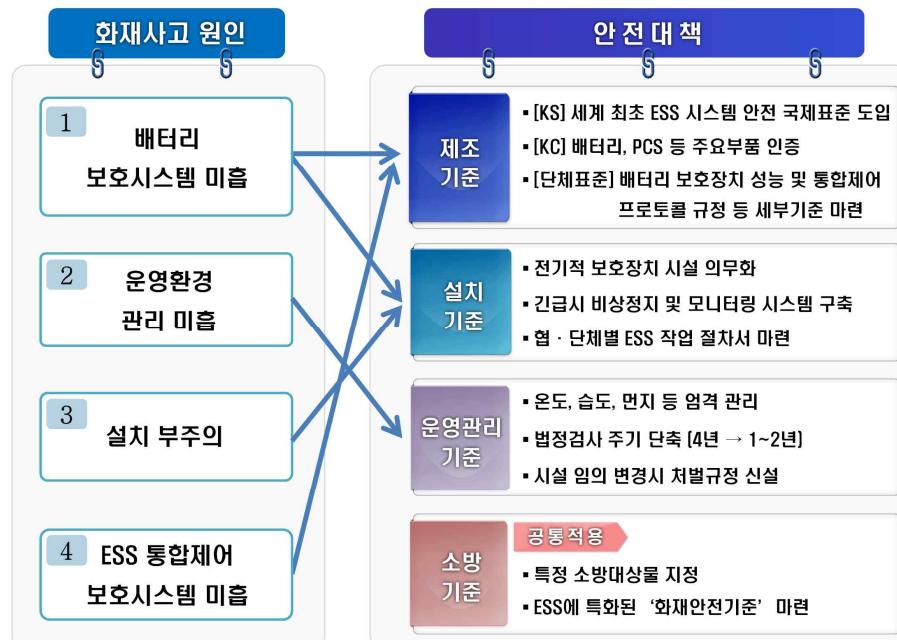
* 분진에 관한 배터리 관리기준은 존재하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③ **(설치 부주의)** 배터리 보관불량, 오결선 등 ESS 설치 부주의시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④ **(통합보호·관리체계 미흡)** 제작주체가 다른 EMS·PMS·BMS가 SI업체 주도로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되지 못하는 등,
 -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보호되지 못했던 점이 사고예방, 화재시 전체 시스템으로의 확산 방지 및 원활한 사고 원인 조사 등에 있어서 문제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⑤ 일부 배터리셀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를 모사한 시험을 했으나 배터리 자체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셀 내부단락은 발견되지 않았다.
 - 다만, 제조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충방전 범위가 넓고 만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자체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참고 2 ESS 화재사고 관련 그간의 대응 조치

□ 산업부는 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1,490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정밀안전 진단, 다중이용시설 ESS 전면 가동중단 등 다각적인 대응조치 실시



참고 3 ESS 화재사고 원인 및 안전대책



참고 4 기존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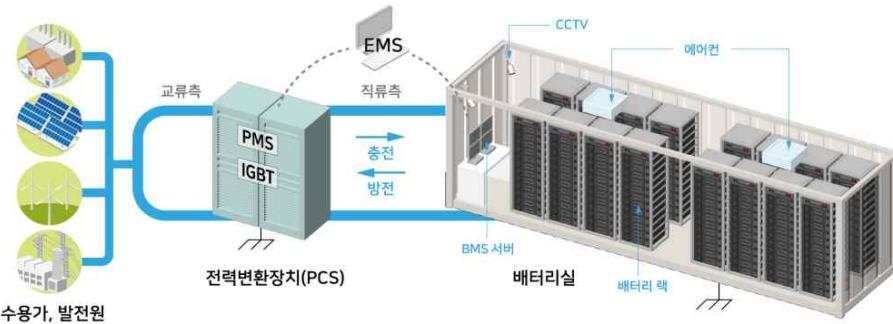
- ❶ 모든 사업장은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공통안전조치를 적용,
- ❷ 가동중단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방화벽 등 보완조치 후 재가동토록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은 소방청의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 예정

<안전 조치 내용 및 재가동 방안>



참고 5 ESS 개요 및 보급 현황

- (ESS 개요) 태양광/풍력 등에서 발전되거나 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후, 필요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 배터리, 전력변환장치(PCS), 관리 소프트웨어(BMS, PMS, EMS) 등이 전력흐름을 통합적으로 제어·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전력설비



- (ESS 보급현황) 국내 ESS 보급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REC 등 ESS 보급 지원정책에 힘입어 '17년부터 급격히 확대'

* '18년 국내 ESS 시장 규모는 약 3.6GWh로 세계시장의 약 1/3을 차지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사업장 수	30	47	124	74	268	947	1,490
배터리(MWh)	30	36	145	207	723	3,632	4,773

※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 설치용도는 총 1,490개 ESS 중 신재생에너지 연계 778개(1,859MWh), 피크저감 등 712개(2,914MWh)로 구성

구 분	신재생에너지 연계			피크저감 등			합 계
	태양광	풍력	소 계	피크 저 감	비상발전 등	소 계	
사업장 수	754	24	778	657	55	712	1,490
배터리(MWh)	1,587	272	1,859	2,757	157	2,914	4,773

※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